

전문기관의 지정기준(제81조의2제1항 관련)

1. 조직: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
 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- 나.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
 - 다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2. 인력: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 - 가.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·개발: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
 - 나.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: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
 - 다.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: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
 - 라.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: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
3. 시설: 전용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공간·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